

제 1795 호
1994.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6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3058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3
제 3059 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7
제 3060 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상치조례	7
● 공 고	
제 1934-2 호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공고	11
● 구 고 시	
제 1993-47 호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조성)변경시행인가(사업기간연장)(강동)	11
제 1993-50 호 민영주택(재건축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양천)	12
제 1993-51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	12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함께하는 고통분담 함께웃는 밝은내일”

0061

제 1993- 6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 13
 제 1993- 7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5
 제 1993- 7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실시계획인가(성북) 15
 제 1994- 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지적승인(동대문) 16

● 구 공 고

제 1993-150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관계도면공람공고(강동) 16
 제 1993-151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로·학교)공람공고(동작) 17
 제 1993-186 호 주택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공람공고(영등포) 18
 제 1993-257 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공고(구로) 18
 제 1993-258 호 열사용기자재시공업영업정지처분공고(구로) 19
 제 1993-287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서초) 19
 제 1993-288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자진반납)공고(서초) 20

● 인 사 발 령 20

● 공 지 사 항 21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1. 10

서울특별시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58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17조”를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수장치라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제8조·제9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23조·제25조·제32조·제33조·제40조·제41조 중 “양수기”를 각각 “수도계량기”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이하 “임시급수”라 한다)에

내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 중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을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업종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용 2종에서 가정용 또는 영업용 1종으로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김철분꺼리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업종인 영업용 2종에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 또는 승인신청이 취소되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을 징수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급수탑·공설 소화전의 급수사용료 부과는 1994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⑤(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급수사용료 및 급수관손료는 1994년 3월 김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담금액표

구 분	시 설 분 담 금	
	신 설	개 조
내경 13m/m	132,00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내경 20m/m	383,000원	
내경 25m/m	680,000원	
내경 40m/m	2,360,000원	
내경 50m/m	3,330,000원	

구 분	시 설 분 담 금	
	신 설	개 조
내경 75m/m	6,910,000원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내경 100m/m	11,790,000원	
내경 150m/m	25,680,000원	
내경 200m/m	36,500,000원	
내경 250m/m	49,200,000원	
내경 300m/m	57,800,000원	
내경 350m/m	78,200,000원	
내경 400m/m	84,500,000원	

※내경구분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가. 급수사용료 요율표

구 분	1개월 기본요금		초 과 사 용 료	
	기본수량 (세제곱미터)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원)
가 정 용	10	1,090	11~ 30	160
			31~ 50	320
			51 이상	430
영 업 용 1 종	20	3,400	21~ 50	360
			51~100	440
			101~300	460
			301 이상	530
영 업 용 2 종	30	11,040	31~ 50	460
			51~100	540
			101~200	670
			201~300	780
육 망 용 1 종	500	88,100	301 이상	860
			501~1,000	210
			1,001~2,000	240
			2,001~3,000	280
육 망 용 2 종	200	104,700	3,001 이상	320
			201~500	860
			501~1,000	980
			1,001~2,000	1,060
			2,001~3,000	1,100
공 공 용	30	5,000	3,001 이상	1,130
공 공 용	30	5,000	31 이상	300

나. 급수종별구분표

1) 가정용

- (가)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의 소매점
-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라) 신문보급소, 신채장애자가 경영하 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마) 공용급수전
- (바)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2) 영업용 1종

-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업소
- (나) 사설소화전
- (다)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 설에 한함)

3) 영업용 2종

- (가) 식품점객업
- (나) 공연장
- (다) 숙박업
- (라)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마)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바) 차량관계정비(검사장 포함), 주차 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 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사) 음식점
- (아) 학원(도서관 포함, 피아노 개인지 도 제외)
- (자) 사진현상소
- (차)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 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카)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

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디) 발전소
- (피) 이발소(미장원 제외)
- (하)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기) 화축, 식목업
- (니)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의료기관 제 외)), 오피스텔
- (더) 도살장, 정육점
- (러) 양조업, 제빙업, 제분업(방앗간 포 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 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 제조업(자 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 조 포함)
- (머) 염색업 및 섬유유제조 가공업, 식 료품제조 가공업, 피혁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 이상 사 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 (버)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 함)
- (서)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어)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저제품 포함)
- (저)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 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 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 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차)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도 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 우에 한함)
- (카)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 중단계 요율적용)
- (타)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p>4. 욕탕공 1종 (가)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p> <p>5. 욕탕공 2종 (가) 복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 (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다) 가족탕업, 한중탕업(허가업소의 업체구분은 허가기준) (라)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사술소</p> <p>6. 공공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p>	<p>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p> <p>(나) 학교 (다) 정당 (라) 병영 (마) 신문사, 방송국 (바)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이거사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사) 한국과학기술단지 연구기관 (아)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자)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p>
--	--

별표 3.

급수관 손료표

구경별	요금	비고
13m/m	1개월 370원	
20m/m	1개월 680원	
25m/m	1개월 940원	
40m/m	1개월 2,530원	
50m/m	1개월 4,390원	
75m/m	1개월 6,260원	
100m/m	1개월 9,800원	
150m/m	1개월 19,600원	
200m/m	1개월 30,200원	
250m/m	1개월 45,400원	
300m/m	1개월 76,800원	
350m/m	1개월 106,000원	
400m/m	1개월 113,000원	

※구경은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한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상수도요금 등이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상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생산시설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에 어려움이 많으며, 지방 요금수준

보다도 월등히 낮아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으나, 상수도요금 등을 조정하여 생산원가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 보전하여 수도물의 원활한 공급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급수업종 등을 일부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상수도요금 등 조정
 - 납수사용료 : '92년말 지방요금수준 조정(평균 26% 조정)
 - 급수관손료 : 서울과 '92 지방요금의 중간수준 조정
 - 시설분담금 : 서울과 '92 지방요금의 중간수준 조정
- 양수기의 명칭을 수도계량기로 변경함(안 제8조 외).
- 시설분담금 부과상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 급수탑, 공설소화전의 급수업종 조정(안 별표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1. 10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59호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

공업용수사용요금표

기본요금	계량요금	초과요금
m ³ 당 20.84원	m ³ 당 9.44원	m ³ 당 45.68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 사

용료는 199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구로구, 영등포구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요금을 조정하여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손을 일부 보전하고,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을 줄임으로써 공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업용수 사용료조정 :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요금의 중간수준조정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4. 1. 10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3060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경관) ①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제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사업에 관한 사항
 -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 2장 임원과 직원
- 제 7조(임원) ①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 1. 동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및 시민대표
- 제 8조(사장) ①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사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조(이사) ①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사업두을 분장한다.
 ③비상임이사에게는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제 10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11조(경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몰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 12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 13조(이사회에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이사회) ①공사의 임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사 업

제16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철 제5·6·7·8호선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
2. 지하철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지하철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제1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지하철요금에 대하여 운임을 정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사는 운임을 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19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0조(예산과 결산) ①공사는 매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3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계리의 원칙)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차기이월금

②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미치분 이익금
2. 이익준비금

제5장 기 계

제23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4조(차관)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장은 제1항의 의결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5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시장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제례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27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0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와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직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출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설립년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지하철 5·6·7·8호선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여 공사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일·직원의 임용과 사업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본금(안 제4조)-3조천, 서울특별시 전액출자
- 임원(안 제7조)-약간임(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
*비상임 이사는 관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에서 임명
- 사업(안 제16조)
-지하철 제5·6·7·8호선 운영 및 이에 따른 주변지역개발과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지하철 운영효과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
-상기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호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공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서울의 국제후보를 위하여 함께 일할 지방전문직공무원(서울특

별시국제후보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지방
공무원법 제3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4. 1. 10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분 야	인 원	자 격
서울특별시 국제후보 전문요원	지방전문직 "라"급 또는 "마"급 (영어 2명, 일본어 1 명)	(공통) • 공고일 현재 28세 이하의 여성 •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라”급) • 해당이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이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통역안내분야 3 년 이상 유경험자 (“마”급) • “라”급 자격 및 경력요건에 미달하는 자격, 경력 이 있는 자 또는 자격, 경력은 없으나 해당이학에 능통한 자

2. 서류제출 및 기간

• 제출서류

- 1) 자필이력서(사전첨부) 1통
-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제출기간: 1994년 1월 27일~1월 28일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국제교류과(본인
직접 제출)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어학능력시험 및 면접시험 실시
- 어학능력시험 및 면접시험 일시와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함.

4. 기타사항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의 인사관리규칙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과(전화: 750-8501, 8502)에 문의 바람.

구 고 시

●강동구고시제 1993-47호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조성)환경
시행인가(사업기간연장)

1. 강동구고시 제92-39호로 시행허가된 강동구 상인동 산 40 외 1필지상 도시계획사업(병일근린공원조성)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공원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시행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공인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1. 10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 시행지 : 변경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변경 없음.
- 라. 사업규모 및 면적 : 변경 없음.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 당초 : 89. 3. 30 ~ 93. 12. 30
 - 변경 : 89. 3. 30 ~ 94. 12.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생략
- 사. 시행인가 설계도서 : 생략

●양천구고시제 1993-50호

민영주택(재건축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재건축아파트)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1. 10

양 천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재건축)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무단 재건축주택조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 가. 사업지 위치 : 양천구 목동 768-5, 14
 - 나. 사업지 면적 : 3,643.20㎡
 - 다.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16층 1동 아파트 103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1994. 1. ~ 1996. 1.
- 5. 사업승인일자 : 1993. 12. 31

●양천구고시제 1993-51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장)

1. 양천구고시 제1992-22호(92. 8. 8)로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양천구 목동 911-1호의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이화여대 의대부속 목동병원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서울특별시 위입규정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1. 10

양 천 구 청 장

가. 인가내용

- 1) 사업 시행지 : 양천구 목동 911-1호 (변경 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이화여대 의대부속 목동병원 신축공사
-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경의숙,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 4)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소유 (변경 없음)

<p>5) 사업시행규모 (변경 없음) - 대지면적 : 23,527.7㎡ - 시정규모 : 건축면적 7,371.79㎡ 건축연면적 44,362.68㎡</p> <p>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당초 : 1989. 12. 11~1993. 12. 30 - 변경 : 1989. 12. 11~1994. 4. 30</p> <p>7) 설계도서 : 생략</p> <p>●서대문구고시제 1993-6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305호(92.9.28)로 시 설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73호(92. 10. 26)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고시 제10호 (93. 2. 24)로 인가한 바 있는 서대문구 홍은동 17-21~16-17간 도시계획사업(도 로) 실시계획을</p> <p>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 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1. 10 서대문구청장</p>
---	---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비 고
서대문구 홍은동 17-21~16-17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서대문구 홍은동 17-21~16-17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 6m L=130m	93. 1. ~ 94. 12. 31

가.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
 확인가일~94. 12. 31

다. 수용토지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목·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조서 참조 (변경)

라.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참조 (변경)

●성북구고시제 1993-7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1-49호(91. 12. 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한 "길음동 619 주변 도로확장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목과 920-3405~8, 건설관리과 920-3400~4).

1994. 1. 10

성북구청장

- 가. 변경내용: 지장물 누락 1건
- 나. 기타사항은 변경 없음.

과로 붙임: 물건조서(변경) 1부

물 건 조 서(변경)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성북구 삼선5가 411

의뢰부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의 종류: 길음동 619 주변 도로확장공사

일련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구분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구분	면적	수량	소유자				
1						길음동 619-13		지장물	철대문	1식	신기철				

●성북구고시제 1993-73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8호(91. 8. 26) 및 성북구고시 제1992-25호(92. 4. 18) 허가된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 도시경비과(920-338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사업시행자: 성북구 경동동 861-1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국민대학교 시설증축

및 용도번호

다. 사업시행 면적 및 내역

- 1) 시행면적(도시계획 결정면적)
 - 당초 164,467㎡
 - 변경 164,033㎡
- 2) 사업내역
 - 가) 기존: 동수-10동
 - 연면적-13,858.96㎡
 - 나) 허가내역
 - 기 허가(도서관 증축)
 - 동수-1동(지하 2층, 지상 5층)
 - 연면적-13,858.96㎡
 - 부지조성 및 진입로 확장-5,553㎡
 - 급회허가(기존 도서관-연구시설)
 - 연구시설 증축-4,244.47㎡
 - 용도변경-6,618.65㎡
 - 면적-40.03㎡

공공 하수도 사용개시 대장

연번	공사명	위 치	사용개시 연월일	배수구역	하수도개량		합분 류식	비고
					관경	길이		
1	고덕동 172~고덕천 간 오수관 신설공사	하일 601 주변	93.12.17	성내 배수구역	D= 500m/m	L= 274m	분류식	
2	암사동 490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암사 490 주변	93.12.17	.	D=800~ 900m/m	L= 75m	합류식	
3	천호동 21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천호 21 주변	93.11.8	.	D= 450m/m	L= 138m	.	
4	성내동 207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성내 207 주변	93.12.6	.	D= 1,300m/m	L= 92m	.	

공고 및 공사개요

연번	사용개시 연월일	배수구역	위 치	합분류 여부	비 고
1	93.12.17	성내 배수구역	하일 601 주변	분류식	신 설
2	93.12.17	.	암사 490 주변	합류식	개 량
3	93.11.8	.	천호 21 주변	.	.
4	93.12.6	.	성내 207 주변	.	.

●동작구공고제 1993-151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철사·도로·학교)
공람공고

1.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서울특별시 행정
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
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 10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1993. 12. 31~1994. 1. 13
(14일간)

나. 공람장소: 동작구청 도시정비과(820-
1385~7)

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철사) 조서

구분	사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공용의 철사	상도동 366-5 외 1필지	3,318㎡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중로	5	12	749	동작구 옥석동	동작구 상도동	기·종점 지면 삽입
변경	중로	3	12	1,370	동작구 옥석동 231-46	동작구 상도동 108-4	연장변경 및 일부 구간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당초	학교(승실대학교)	상도동 1-1	122,303	도시계획사업(도로)으로 면적
변경	.	.	121,808.2	감소(감 494.8㎡)

●영등포구공고제 1993-186호
주역개량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붙양주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우리 구 관내 신길동 339 일대가 건설부고시 제380호(79. 8. 28)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시고시 제278호(82. 6. 26) 및 서울시고시 제188호(89. 4. 16)로 사업계획일시 계획인가된 신길3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93. 7. 14)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공람공고합니다.
2.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1994. 1. 10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신길 제3구역 제1지구 주역개량개발사업

나.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339 일대

다. 사업 시행자: 영등포구청장

라. 사업시행기한: 1994년 12월 31일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바. 공람장소: 영등포구청 주역과

사.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사항

위 치	면 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공 램 내 용	비 고
영등포구 신길동 339 일대	13,031	93.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사항	

아. 변경내역: 생략

●구로구공고제 1993-257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공고

건설업법 제5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 행정처분하였 기 동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 고합니다.

1994. 1. 10			구로구청장		
업종 및 면허기준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사항
도공사(02-34) 막장방수(03- 3) 철근콘크리트(10-37)	보흥토건(주)	신승철	구로구 고척동 103-4 산업용 종 상가 은행 동 202호	·국세체납 ·건설업법 제 52조제1항 제7호 규정 위반	영업정지 6월 (93. 12. 30 ~94. 6. 29)

●구로구공고제 1993-258호
열사용기자재시공업영업정지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6조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기자재관리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4. 1. 10
구로구청장

행정처분 대상업소

지정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역	비 고
23	중원설비	김영호	독산동 288-67 송산빌딩 110	영업정지 2월	94. 1. 12 ~3. 11
410	태성설비	서정선	독산동 193-23	"	"
363	(주)천우기계설비	양기봉	독산본동 954	"	"
396	동기설비	최동철	독산동 907-11	"	"
70	일전난방사	전용하	가리봉동 234-49	"	"

●서초구공고제 1993-28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제1항, 제4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 등

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 10
서 초 구 청 장

영업정지 해제 경단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역 (등록기준대비)	영업정지기간	비고
90-19-243	(주)거부 종합건설	이덕기	서초구 양재동 241-4	소재지변경 신고지역	93. 12. 30~ 94. 3. 29	
91-19-135	범우토건 (주)	정지범	서초구 서초동 1485-2	무단 전출	등록 말소	
91-19-619	삼양주방 (주)	최영복	서초구 서초동 1487-127	기술계변경 신고지역	93. 12. 30~ 94. 6. 29	

●서초구공고제 1993-28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자진반납)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자진반납)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 10
 서 초 구 청 장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말소일자	비 고
1	89-19-26	상상건업(주)	황치현	서초구 방배동 858-1	93. 12. 30	자진반납
2	90-19-75	(주)광원건설	김상인	서초동 1440-1	·	·
3	91-19-188	(주)용운주택	김달직	방배동 854-26	·	·
4	92-19-37	(주)서방주택	조정식	서초동 1563-10	·	·
5	92-19-48	(주)나인건설	이상봉 외 1	서초동 1515-1	·	·

인 사 발령

6급이하 공무원 특별승진임용 및 전보

● 1994년 1월 3일자

영 제 1 호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재 순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총 무 과	지방행정 주 사 보
2	송 영 추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시 민 과	·
3	신 경 원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상 공 과	·
4	홍 성 걸	지방기계주사에 임함 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중앙하수처리(사)	지 방 기 계 주 사 보
5	김 배 영	지방세무주사보에 임함	세무지도과	지 방 세 무 서 기
6	김 효 섭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사 회 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기능직 임무완 파견 해제				
● 1994년 1월 3일자				영 제 4 호
연번	성 명	발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임 제 봉 641124-2006121	감사담당관 파견해제	종 로 구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0등급)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 1994년 1월 4일자				영 제 5 호
연번	성 명	발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공 상 준 430515-1025411	서울지방경찰청 동부지청 파견근무를 해제함 의약과 근무를 명함	내 무 국	지 방 약 무 주 사
기능직 공무원 복직				
● 1994년 1월 1일자				
연번	성 명	발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석 은 영 690229-2018315	복직을 명함 중앙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과 근무를 명함	중랑하수처리 사업소관리과 (후 직)	지 방 위 생 인 (사 역) 10 등 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지 사 항</div>			<p>②용시인서교부 및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93. 12. 30~94. 1. 18(20일간)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 또는 경찰서 면원봉사실 <p>③용시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75. 12. 31 이전 출생자)으로서 평역을 필하지 아니한 자 · 전문대 22, 일반대 24세 이내 졸업이 가능한 자로 지원접수일 현재, 임명통지가 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징벌검사 수검자로 용시인서 접수일 현재 임명통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징벌검사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의무경찰모집 안내</p> <p>부무기간 26개월로 단속 전역 후 경찰관 임용 특혜 부여 대학생 임명연기증인 자 용시가능</p> <p>①모집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경찰 : 0000명(약대 포함) · 근무처 : 파출소, 교통, 운전, 유치장, 전산(컴퓨터)실, 행정보조, 기동대, 방범 순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징병검사 편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복병된 자(대학생은 제외) - 병역 기피 사실(징병검사 입영)이 있는 자 -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력에 편입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접수일 현재 대학생으로 입영 통지가 된 자 또는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

④ 시험일자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발표
1차 신체검사 인성검사	94. 1. 21	응시원서 접수처에 게시	즉석 발표
2차 면접시험	94. 2. 3	1차 시험 발표시 공고	94. 2. 7

⑤ 체격기준

신장(cm)	체중(kg)	흉 위	시 력	청 력	혈압(mm/Hg)
165~195	55~92	신장의 1/2 이상인 자	· 0.8 이상 · 안경 착용자 { 안경 쓰고 0.8 이상 { 안경 벗고 0.3 이상 · 색맹이 아닌 자	완전한 자	145/90 이상 90/60 이하가 아닌 자

⑥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원서교부처에서 무료 배부
- 신원진술서(사전부착) : 원서교부처에서 무료 배부
- 신체검사서 1통 : 국·공립 또는 종합병 원장이 발행
- 학력증명서 1통 : 최중학교 졸업, 재학, 수료 등
- 병력증명서 1통 : 만 19세 이상인 자, 본래지 지방병무청장 발행
- 호적등본 1통 : 현 거주지 우체국으로 송부의뢰하면 가능

⑦ 연락처

- 서울지방경찰청경관관리계(720-1579)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운전자를 찾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운전자의 1994년 중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 10

서울특별시 장

1. 응시자격
 - 가. 서울 시내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제1호(제1종 운전면허)의 면허증 소지자
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필기시험	지리, 교통 및 운수관련법규, 안전운행, 일반교양	
방 법	선택형(100분항내)	
시험시간	오전	
<p>※ 면접시험 : 잠정 유보</p> <p>나.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6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p> <p>3. 시험시행일정 및 방법(발급신청 포함)</p> <p>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시 새마을 교동회관(서울시 교동연수원 서무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7(전화 : 414-0897)</p> <p>나. 원서접수기간 : 1994. 1. 20부터 수시(공휴일 제외)</p> <p>경일 10시~17시, 토요일 10시~12시</p> <p>다. 시험일시 및 장소 : 원서접수시 안내 및 공고(매월 1회 이상 실시)</p> <p>라.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단신 반명함판 3.5cm X 4.5cm), 운전면허증 사본(접수시 저참), 응시수수료(3,000원 상당의 서울시 수입증지), 인장 <p>마. 접수방법 : 직접계출 또는 우송</p>		
<p>바. 합격자 발표 : 시험시행 후 3일 이내 원서접수 장소에 게시 공고함.</p> <p>4. 자격증 발급 및 교부(시험합격자 및 재발급자)</p> <p>가. 발급 : 구비서류-신청서(소장양식) 수수료-1,400원(수입증지) 사진-2매</p> <p>나. 교부 : 신청 후 3일 이내 접수장소에서 교부</p> <p>5. 시험의 특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이외에서 시행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중 지리를 제외한 과목은 면제한다. <p>6. 자격증 차내 게시</p> <p>가. 자격취득자가 택시운전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차내 게시 후 승무하여야 한다.</p> <p>나. 미게시 벌칙 : 자격정지 5일</p>		
7. 자격시험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 : 10문항 · 교통운수 및 관련법규 : 25문항 · 안전운행 : 25문항 · 일반교양 : 15문항 <p>(서비스 포함) (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 : 30문항(30%) · 교통운수 및 관련법규 : 25문항(25%) · 안전운행 : 25문항(25%) · 일반교양 : 20문항(20%) <p>(서비스 포함) (100)</p>
면 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 : 운전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의 구체적 지리 · 심정 : 택시운전자의 자세, 윤리관 및 직업관 등 	· 제도정착시까지 유보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개정(93. 10. 30)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받아야 한다(응시원서 첨부 동일 사진 1매 제출)

다.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5일 전까지 서울시 새마을교통회관(교통연수원) 게시판에 게시공고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수2과(774-8534) 또는 서울시 새마을교통회관(교통연수원 414-08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